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237호 2020. 6. 15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조 례

○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(예천군 조례 제2405호)

회 람									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0년 6월 15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조례 제2405호

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

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5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⑨ 군수는 공무원이 재해·재난·곤충엑스포 등 대규모 행사·산불비상근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포상 등 군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포상휴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(대통령령 제30311호, 2019. 12. 31.)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, 재해·재난·곤충엑스포 등 대규모 행사·산불비상근무 등으로 격무에 종사하거나 포상 등 군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부여하는 포상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

◇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개정으로 중복 및 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 삭제(제21조제5항)

-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0항·제11항에 따라 시행하는 여성보건 휴가 및 임신검진휴가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 [시행 2020.1.16.][대통령령 제30256호, 2019.12.24.]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~⑨ (생략)

- ⑩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. <신설 2019. 12. 31.>
- ⑪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. <신설 2019. 12. 31.>

나. 포상휴가 요건 및 포상휴가 일수 확대(제21조제9항)

- 포상휴가 요건

- 기존 : 훈장·포장을 받은 때, 국무총리이상 표창,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,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
- 변경 : 재해·재난·곤충엑스포 등 대규모 행사·산불비상근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, 포상 등 군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

- 포상휴가 일수

- 연 1회 2일 이내 → 연 5일 이내로 확대